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45호, 2024. 2. 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용도변경 승인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영업등록 간주 대상 영업자의 범위와 일치시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도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한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 법률 제2024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원료"를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제조·가공 등을 거쳐 수출하는 것을 전제로 수입하는 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